

日本, 漁港의 維持 관리 ②

地方公共團體서 管理

1. 어항으로 지정되었을 때

어항행정의 첫걸음은 어항의 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어항은 구역과 시설로 되는 물적 시설과 이러한 것을 관리운영하는 인적수단인 관리자의 여러 요건이 구비되어야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어항의 지정은 단순히 물적 시설의 제요건이 구비된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항을 지정하는 것은 어항으로서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고 이것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정당시는 시설도 전혀 없는 상태의 경우가 많으나, 이것을 하니의 어항으로써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이것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시키는 것이 어항관리자의 직책이므로 어항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바로 어항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어항법에서는 농림수산대신(大臣)이 어항 소재지의 지방공공단체를 어항관리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 수속은 어항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관계都道府縣知事의 의견을 들어 고시한다.

이와같이 수속을 거쳐 어항관리자로 지정된 지방공공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제1종 어항 및 제2종 어

항의 어항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농림수산대신의 직권은 당해 어항 관리자가 市町村인 경우에 있어서는 都道府縣知事에 위임되어 있고, 都道府縣知事은 그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2. 어항관리자는 누가 되나

어항관리자가 되는 것은 어항소재지의 지방공공단체, 즉 都道府縣知事 또는 市町村으로 한정되어 있다.

어항법 제정당사는 당해 어항을 지구내에 가진 수산업협동조합도 어항관리자로 될 수 있었으나, 어항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어항관리 규정에 의해서 선박 등의 정박금지, 또는 이동명령 등의 강제권을 규정해 놓고 있고 또한 이용대가의 강제 징수, 벌칙의 적용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병행한 유지관리가 곤란한 점이 있어 1956년에 현행 제도로 개정하였다.

어항관리자의 지정은 어항관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해지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제1종 어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市町村, 특히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都道府縣, 제2종 어항에 있어서는 市町村 또는 都道府縣, 제3종 어항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都道府縣, 특별한 경우는 市町村, 제4종 어항에 있어서는 예외없이 都道府縣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어항이용범위와 지방공공단체의 행정범위와의 관련에 의한 것이다.

어항관리자의 지정기준

가. 제1종 어항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타 市町村을 해당 어항 관리자로 지정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市町村으로 한다.

가) 市町村이 당해 어항의 기본 시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행하고 있고, 당해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국고보조 제외)중 당해 市町村의 부담금이 都道府縣 등의 부담금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경우.

나) 당해 어항 소재지의 都道府縣, 市町村 및 당해 어항을 지구내에 갖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市町村을 어항관리자로 지정함을 都道府縣知事에게 특별히 요청하였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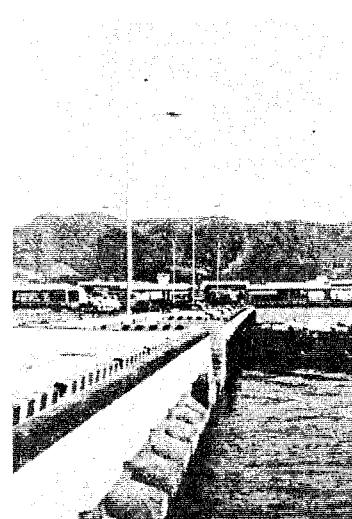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위에 해당 어항에 대하여 어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대신의 지정이 되었을 때는 都道府縣이 된다.

가) 都道府縣이 당해 어항의 기본시설 전부 또는 대부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행하고 있는 경우

로써 당해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국고보조금 제외)중 당해 都道府縣의 부담금이 市町村 등의 부담금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경우

나) 당해 어항 기본시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설치(당해 어항의 구역내의 유흙(陸域)보전 및 당해 어항 구역내의 수역(水域) 배후에 있는 국토보전을 위한 해안에 관한 타법령에서 규정한 견용공작물의 신설 또는 개량을 포함함)와 유지관리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당해 어항 소재지의 市町村 부담금과 당해 市町村의 구역내에서 국가가 시행하고, 또 都道府縣이나 당해 市町村이 국가의 보조금교부를 받아서 시행하는 기타 공공적인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당해 市町村의 부담금과의 합계액이 당해 市町村에 대한 지방교부세법 제2조 제5호의 기준재정수입액에 비교하여 현저히 많고 그외에 당해 어항의 기본시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규모가 큼으로써 고도의 기술과 기계력을 요하기 때문에, 당해 市町村이 당해 어항의 기본시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행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농림수산대신이 인정한 때

다) 당해 어항소재지의 都道府縣, 市町村 및 당해 어항을 지구내에 갖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과의 협의에 의해서 都道府縣을 어항관리자로 지정할 것을 농림수산대신에게 특히 요청하였을 때



나. 제2종 어항

1) 제1종 어항의 2항에 해당하는 경우 都道府縣을 당해 어항의 어항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당해 어항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농림수산대신의 지정이 있었을 때는 都道府縣이 된다.

2) 제2종 어항에 대한 지정기준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市町村이 된다.

다. 제3종 어항

1) 都道府縣이 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市町村을 할 수가 있다.

가) 市町村이 당해 어항의 기본 시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유지 관리를 행하고 있을 경우로써 당해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요하는 비용(국가보조 제외)중 당해 市町村의 부담금이 都道府縣의 부담금에 비하여 현저히 많을 경우

제1종 어항 및 제2종 어항으로써 농림수산대신의 직권위임을 받은 都道府縣知事が 어항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와 공청회의 개최에 있어서도 都道府縣知事が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경우 都道府縣知事 또는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어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어항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히 종래의 어항관리자를 바꾸고 새 어항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전제이고 일반적으로는 어항 정비사업이 대규모일 경우 고도기술을 요하며 어항구역의 해안선 연장 길이가 길고 해안관리자에 많은 비용을 요하는 등의 이용에 의해서 어항관리자를 市町村에서 都道府縣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어항관리자가 어항의 유지관리를 적정하게 행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써 취소한 예는 없다.

더욱이 일반적인 사례로서 제1

종 어항 또는 제2종 어항의 관리자를 市町村에서 都道府縣으로 바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속이 필요하다.

都道府縣知사는 都道府縣이 어항관리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정회망 연월일을 기재한 지정신청서에

①지정을 받고자 하는 이유

②종래의 어항관리자(市町村)취 소에 대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縣의 공보 사본

③공청회 회의록

④종래의 어항관리자(市町村)을 취소한 고시안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한다.

농림수산대신은 이 신청이 있을 때는 당해 어항을 어항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농림수산대신이 어항관리자를 지정하고 더불어 지정의 고시 예정년월일을 都道府縣知事에게 통지하고 당해 都道府縣을 어항관리자로서 지정고시한다.

고시의 예정년월일을 통지받은 都道府縣知事は 동일부로 그 지정한 어항관리자(市町村)의 지정을 취소 고시하고, 그결과를 농림수산부대신에게 보고한다.

라. 제4종 어항

都道府縣이 된다.

3. 어항관리자를 변경 하려면

어항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단 지정된 어항관리자가 어항의 유지 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어항관리자로써 적당치 않다고 인정할 경우는 농림수산대신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다.

이때에 필요한 수속은 공청회를 열고 아울러 고시를 하여야 한다 (어항법 제25조 제3항~5항). 다만

어항법에서는
농림수산대신(大臣)이
어항 소재지에
지방공공단체를
어항관리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 수속은
어항심의회의 의견을 거쳐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관계 都道府縣知事의 의견을
들어
고시한다.

4. 어항관리자의 직책

어항관리자의 직책 및 사무에 대하여는 어항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어항관리규정을 정하고 이 규정에 의해서 어항의 유지관리를 행한다.

나. 어항발전을 위해서 조사연구, 통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어항관리회의 실치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라. 이용의 대가를 징수한다.

마. 토지, 수면의 사용 수용 등을 행한다.

바. 어항대장의 조제(調製)를 행한다.

이러한 사무는 농림수산대신이 어항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공단체를 어항관리자로 지정함으로써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률 또는 정령(政令)에 의해서 보통지방공공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 즉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어항관리자가 행하는 어항의 관리는 행정법상의 영조물(營造物)로서의 어항존립을 유지하고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시킨다. 말하자면 영조물 관리라고 보면 적절할 것이다.

어항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로서도 이러한 어항관리자가 행하는 사무 외에 별도의 국가사무로서 행하는 즉 어항시설의 처분제한, 어항시설의 이용규제, 어항보존을 위한 행위제한, 매립인허 등이 있다. 이 쌍방의 사무집행에 의해서 어항기능이 보전되고 있다.

더욱이 어항관리자의 직책에 대하여는 어항법에 규정한 외에 공공시설의 관리자로서(지방자치법상) 공공장소의 관리자로서(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상), 폐유처리시설의 관리자로서(해안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상), 공(公)의 영조물의 관리자로서의(국가배상법상) 직책이 부과되어 있다.

5. 어항관리자와 해안관리자와의 관계

해안법에 의하여 해안보전구역의 관리는 원칙으로 당해 해안보전구역을 관할하는 都道府縣知事が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안보전구역과 중복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 해안보전구역의 관리도 당해 어항의 관리자인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다(해안법 제5조 1항, 3항), 또 어항구역에 접해 있는 해안보전구역에 있어서도 어항관리자의 장이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都道府縣知사와 당해 어항관리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대하여는 같이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그 관리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해안법 제5조 제4항).

이러한 규정은 어항의 관리와 해안보전구역의 관리가 그 성격상 공통면이 많고 쌍방의 행정을 조정하면서 일체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정하였다.

이 경우 해안관리자를 '어항관리자'로 하지 않고 '어항관리자인

지방공공단체의 장'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항의 관리는 어항법상 단체위임사무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해안의 관리는 해안법상 기관 위임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안법은 어항법보다 늦게 1956년에 제정되었으나, 이와 같이 어항구역내의 해안보전구역의 관리도 어항관리자의 장이 같이 행하는 것으로 되어 市町村이 어항관리자인 경우에는 해안보전시설의 정비사업이 대규모인 경우 등은 그 재정부담, 공사의 시행 등의 면에서 대응이 곤란한 경우도 예상되므로 이러한 때에는 어항관리자를 都道府縣에 넘기도록 지도가 행해지고 있다.

더욱이 지역의 중복으로 통일 행위에 대하여 어항법과 해안법의 쌍방 규제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해안법에 조정규정이 있어서 어항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행위, 어항수축계획 또는 어항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해안관리자의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하였다(해안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5호).❾